

제5주제 브로드밴드 인터넷접속과 사후규제

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 - 제로 레이팅을 중심으로-

2016. 12. 28.

한승혁 변호사



목 차

- 1. 망 중립성 원칙의 경쟁법상 의미
- 2. 망 중립성 원칙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
- 3. 망 중립성 원칙 관련 국내 사례 분석
- 4. 제로 레이팅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

망 중립성 원칙의 경쟁법상 의미

망 중립성 원칙의 경쟁법상 의미

망 중립성 원칙의 개념

- ➤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은 그 내용, 유형, 제공사업자, 부착된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(Equal treatment of all data packets; no priority delivery) : 2003년 Tim Wu
 - ✓ End-to-end(단대단) 원칙: 모든 연산기능과 지능은 단말기에 부여하고, 망은 전송의 기능만을 시행한다는 인터넷의 기본설계 사상
 - ✓ 인터넷망의 개방성 및 중립성 유지를 통해 일반 이용자와 콘텐츠사업자(CP) 등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
- ▶ 2000년대 이후 인터넷 생태계 변화에 따라 망중립성 논란 시작
 - ✓ 인터넷 초기 ISP와 CP의 동반성장으로 상호 보완관계
 - ✓ 가입자 포화로 인한 망수익 정체 및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투자비용 증가로, ISP와 CP가 상호 갈등관계로 변화
 - ✓ ISP의 대용량 트래픽 유발 서비스 제한, CP에 대한 추가적인 망 이용대가 요구



망 중립성 원칙의 경쟁법상 의미

망중립성 원칙의 변천

- > **초기의 망중립성:** 망의 개방성 및 중립성 유지를 위한 엄격한 개념
 - ✓ (비차별) ISP의 트래픽을 포함한 모든 트래픽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며, 트래픽에 우선순 위를 두면 안 됨
 - ✓ (상호접속) ISP 간에 상호접속 의무 및 권리를 가짐
 - ✔ (접근성) 최종 이용자는 다른 어떤 최종 이용자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함
- ▶ **현재의 망중립성:** 트래픽이 폭증함에 따라 ISP의 망 관리 권한을 일부 허용
 - ✓ (투명성) ISP는 망 및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
 - ✔ (차단금지) 합법적인 콘텐츠, 어플리케이션, 단말기기 등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을 보장
 - ✓ (비차별) ISP의 트래픽 관리권한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리한 차별 금지
- 망중립성은 고정된 목적 개념이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진화하는 도구 개념



망 중립성 원칙의 경쟁법상 의미: 찬반론

찬성

- ✓ 인터넷의 개방성이 인터넷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며 평등이 본질
- ✓ 트래픽 폭증으로 망투자 여력이 감소함은 근거 불투명
- ✓ 망비용 부과, 전송차별화는 진입장벽화 및 불공정경쟁 초래: 소자본 온라인 기업 저해, 최종소비자 비용 전가
- ✓ 콘텐츠가 인터넷 이용의 목적이므로 ISP가 CP에 이용료를 내야 함
- ✓ CP는 IDC, 전용망, CDN 등의 이용료로 이 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
 - 최종이용자가 인터넷이용료를 내고 있으 므로 이중 부과

반다

- ✓ 투자여력 부족으로 망의 품질이 저하되어 통신시장 발전 저해
- ✓ ISP의 기대이윤 감소로 신규사업자 진입 유인이 사라짐
- ✓ CP의 영향력이 강화된 현재 망중립성은 부적합
- ✓ 소수 CP나 대량 이용자가 다수 트래픽 유 발(통신자원 독점)
 - 소량 이용자가 대량 이용자의 비용을 보 전하는 불공평
- ✓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

망중립성 원칙의 경쟁법상 의미

망중립성 원칙의 경쟁법적 정당성

- ▶ ISP의 망 중립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가능성
 - ✓ ISP가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CP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 써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
 - → 한국 공정거래법상,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(사업활동방해행위), 불공정거래행위(거래거절, 차별적 취급, 부당지원행위 등)이 문제될 수 있음
- > ISP의 망 중립성 원칙 위반과 경쟁법 위반 가능성을 연결시키는 특수한 사정
 - ✓ 인터넷 환경의 특수성(인터넷의 개방성과 중립성)상 ISP에 부여된 특별한 의무
 - ✓ 기간통신사업자(common carrier)의 공적인 역할
 - ✓ ISP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해당 가능성
 - →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



망 중립성 관련 국내외 입법동향

망 중립성 관련 국내 입법동향: 가이드라인

2011년 망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가이드라인(방통위)

- ▶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<u>기본원칙</u> 천명
- ▶ 주요 내용
 - ✔ 이용자의 권리: 콘텐츠, 기기의 자유로운 이용 권리와 트래픽 정보접근 권리
 - ✓ 트래픽 관리 투명성: ISP의 트래픽 관리방침 공개 및 관련 조치시 이용자 고지
 - ✓ 차단금지: 합법적인 콘텐츠, 애플리케이션, 서비스, 기기 등의 차단 금지
 - ✓ 불합리한 차별 금지: 콘텐츠, 애플리케이션, 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금지
 - ✓ 예외: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예외 인정
 - 망의 보안/안정성, 일시적 과부하시, 법령상 필요시 등
 - ✓ 관리형 서비스: 최선형인터넷(Best Effort Internet) 품질의 유지 범위에서 관리형 서비스 (Managed Service) 인정
 - ※ 관리형 서비스: 일반적인 최선형인터넷의 제공 방식과 다른 트래픽 관리기술 등을 통해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



망 중립성 관련 국내 입법동향: 기준

2013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·이용과 트래픽 관리 투명성 기준 (미래부)

- ▶ 트래픽 관리 <u>기본원칙</u>
 - ✓ ISP는 기본적으로 <u>망고도화</u>를 통해 트래픽 증가 대응 및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 트 래픽 관리 허용과 법령에 따른 요금, 서비스 관리
 - ✓ ISP는 <u>서비스의 품질, 용량 등에 비례하여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,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등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해쳐서는 안 된다</u>.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및 요금 제도에 따른다.
- ▶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기준
 - ✔ 투명성: 트래픽 관리정보의 충분한 공개 및 조치시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
 - ✓ 비례성: 관리행위와 목적·동기의 부합 여부,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 강구 여부
 - ✓ 비차별성: 유사 콘텐츠, 기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로 공정경쟁 보호
 - ✓ 망의 기술적 특성: 망 유형, 서비스 제공방식, 주파수 제약 등
- ▶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유형 제시



망 중립성 관련 국내 입법동향: 금지행위 등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[별표 4] 5. 사. 4) 개정안

[별표 4]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(제42조 제1항 관련)

- 5.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
- 사.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
- 4) <u>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</u> <u>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. (다만,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한다.)</u>

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

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
망 중립성 관련 미국 입법동향

미국이 망 중립성 규제에 적극적인 배경

- ▶ 초고속인터넷 접속시장 경쟁상황
 - ✓ 지역별로 독점 혹은 복점인 초고속인터넷 접속시장 상황에 따라 ISP의 트래픽 차단에 대한 우려 존재
- ▶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규제제도 미비
 - ✓ 미국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미국 통신법상 Title I 정보서비스로 분류되어(2015. New Open Internet Rule 이전) FCC의 적극적 규제 어려웠음
- ▶ 구글, 아마존 등 세계적인 CP의 존재
 - ✔ 망중립성 원칙을 배제할 경우 인터넷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
- ※ 다만, 망 중립성 원칙에 부정적인 트럼프 공화당 정권 하에서 망중립성 규제 방향에 대하여는 두고 볼 필요가 있음



망 중립성 관련 미국 입법동향

New Open Internet Rule(2015)

▶ 역무 재분류

✓ 유무선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미국 통신법상 Title II에 편입하여 Open Internet Rule(2010) 등과 관련한 규제관할권 논란의 근본적 종식

➤ Light-touch regulatory framework

- ✓ ISP도 Common Carrier의 규제대상에 편입되었으나, 전체 규제 중에서 일부분 만을 적용하는 가벼운 규제체계
- ✓ 적용규제

이용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금지, 이용자와의 분쟁 발생시 FCC 조사권, 이 용자 정보보호, 통신설비제공 의무,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무

✓ 비적용

요금규제, 보편적서비스 기금납부, 로컬 및 주(state) 차원의 세금 규제



망 중립성 관련 미국 입법동향

New Open Internet Rule(2015)

- ▶ 주요 내용
 - ✓ 투명성 (Enhanced Transparency): 2010년 Open Internet Rule에서의 투명성 원칙은 완전히 유지
 - ✓ 차단금지(No blocking): 합법적 콘텐츠, 애플리케이션, 단말 등의 차단금지
 - ✓ **지연금지**(No throttling): 합법적인 콘텐츠, 애플리케이션 등의 전송속도를 저하하는 행위 금지
 - ✓ **우선처리금지**(No paid prioritization): 대가를 매개로 특정 트래픽을 우호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금지
 - ✓ 합리적 트래픽 관리: 금지행위 예외사항으로 기술적 트래픽관리 필요성 인정
 - 합리성 여부는 case-by-case로 판단
 - 기술적 트래픽 관리에 한정하고 경제적 유인에 의한 관리는 불허(상업적 목적 의 트래픽 우선전송은 불허하고 망보안 등의 사유만 인정)



망중립성 관련 국내 사후규제 사례

망 중립성 관련 국내 사후규제 사례

KT의 삼성 스마트 TV 차단 사건 (2012)

- ➤ KT가 삼성 스마트 TV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 없이 초고속인터넷 접속을 **차단**
 - ✓ 스마트 TV: 지상파시청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되어 VOD, 게임, 웹 활용이 가능한 TV
- ▶ 방송통신위원회의 KT에 대한 경고의결
 - ✔ 이용약관의 근거 없는 접속 제한 행위 및 이용자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 미준수
 -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행위(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제1항 제5호 전단)
 - ✓ LG 스마트 TV 이용자와 달리 삼성 스마트 TV 이용자만 접속을 차단한 행위
 -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{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, 시행령 제42조 [별표 4] 5. 마.1)}
- ▶ 방송통신위원회의 삼성전자에 대한 망 중립성 논의 적극 참여 권고



망 중립성 관련 국내 사후규제 사례

SKT, KT의 카카오 mVoIP(보이스톡) 제한(2012)

- ➤ SKT와 KT가 월 55,000원 이상의 정액요금제 가입자에 대하여만 3G망에서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, 요금제별 사용한도를 제한하고, 그 외의 요금제 가입자에 대하여는 mVoIP 이용을 **차단**하였음
- ➢ 경실련과 진보넷의 방송통신위원회 신고
 - ✓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호(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 부과), 제5호(이용자의 이익 침해) 위반 주장
- ➢ 경실련과 진보넷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

위반 주장 조항	공정위 판단	근거
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(사업활동방해) 필수요소사용·접근의 거절·제한	위법성 판단 유보	(i) 망 중립성 관련 규제당국의 정책적 판단 선행 필요 , (ii) 접근에 일부 제한 을 두었다고 하여 필수요소접근의 거절·제한으로 보기 어려움
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(소비자이익저해행위)	혐의 없음	(i) mVoIP 제한이 데이터 가격인하와 함께 이뤄짐, (ii) 신고 이후 mVoIP 이용 확대하는 요금제 개편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됨

※출처: 김용규,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규제와 인터넷 트래픽 관리: 이슈와 평가(2014)



제로 레이팅(Zero-Rating)의 의미

- ▶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/다운로드할 때 유발되는 데이터 이용의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 (2016. 4. 18. 자 미래부 보도자료)
 - ✓ 해당 데이터 이용대가는 통신사업자와 제휴한 콘텐츠 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→ 스폰서 요금제
 - ✓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데이터 이용 부담 경감의 이익이 있음
 - ✓ 반면, 이용자의 콘텐츠 선택이 왜곡될 우려도 있음
- ▶ 제로 레이팅 사례
 - ✓ KT 다음카카오팩: 월 3,300원에 다음, 카카오 서비스 3GB내 사용 가능
 - ✓ SKT의 11번가 내 쇼핑시 데이터 무료
 - ✓ AT&T의 DirecTV Now 스트리밍 서비스 데이터 무료
- 기존 망 중립성 관련 국내 사후규제 사례와 달리, 아직 접속 차단 등이 문제되지 는 않고 있음



망 중립성 차원에서 국내외 규제기관의 제로 레이팅에 대한 입장

▶ 국내

- ✓ 경제적인 목적의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되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(망 중립성 기준)
- ✓ KT 다음카카오팩에 대하여, 미래부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소지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, 경쟁사에 유사상품 출시를 보류하도록 행정지도 : 다음카카오팩 요금제 가입자와 미가입자간의 이용자 차별?

▶ 유럽: 사안별로 검토

✓ Regulation of European single market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(2015. 11.), BEREC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by National Regulators of European Net Neutrality Rules(2016. 8.)

▶ 미국: 사안별로 검토

✓ FCC는 2016. 11. AT&T에게 DirecTV Now 스트리밍 서비스 데이터 무료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냄



제로 레이팅에서 문제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

- 제로 레이팅의 형태 및 그로 인해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므로, 각 유형별로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
- ▶ 제로 레이팅과 관련한 일반적인 경쟁법적 우려
 - ✓ ISP의 CP 시장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 도구
 - ✓ 자금력이 약한 중소 CP 사업자의 진입장벽

[가상 사례] ISP가 계열 CP와 제휴하여 계열 CP 콘텐츠 이용자에게만 해당 콘텐츠 이용에 대한 데이터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(비계열 CP의 제로 레이팅 제휴 요청 및 그에 대한 거절은 없었음)

- ✓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(계열회사를 위한 차별)?
- ✓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(부당지원행위)?
- ✓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(부당고객유인)?
- ※ 만약 ISP가 비계열 CP의 제로 레이팅 제휴 요청을 거절한 경우,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및 거절로 인한 관련 CP시장에서 계열 CP와 비계열 CP간의 경쟁제한효과 등에 따라 시장지배 적지위남용행위(사업활동방해행위), 불공정거래행위(거래거절) 등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음

제로 레이팅에서 문제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

- ▶ 불공정거래행위(계열회사를 위한 차별)
 - ✓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·수량·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(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문, 시행령 [별표1의2] 2. 다.)
 - ✓ 계열 CP콘텐츠 이용자와 비계열 CP콘텐츠 이용자간의 차별을 통해 계열 CP와 비계열 CP에 대한 차별 자체는 성립 가능(대법원 2007. 2. 23. 선고 2004두14052 판결)
 - ✓ 계열 CP가 정당하게 계열 CP콘텐츠 이용대가를 부담하는 한, "정당한 이유" 없는 차별인가?, "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의도"가 있는가?
- 불공정거래행위(부당지원행위)
 - ✓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·대여금·인력·부동산·유가증권·상품·용역·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 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(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)
 - ✓ 계열 CP가 정당하게 계열 CP콘텐츠 이용대가를 부담하는 한, "상당히 유리한 조건"의 거래인가?, 지원의도가 있는가?
- ▶ 불공정거래행위(부당고객유인행위)
 - ✓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(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, 시행령 [별표1의2] 4. 가.)
 - ✓ 계열 CP가 부담하는 계열 CP콘텐츠 대가가 부당하거나 과대하지 않는 한, 부당고객유인으로 보기는 어려움



<u>합리적인 제로 레이팅</u> 정책의 필요성

- 제로 레이팅의 허용 여부 및 허용 범위는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함
- 제로 레이팅은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음
 - ✔ 망 중립성은 고정된 목적 개념이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진화하는 도구 개념
 - ✓ IoT 등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데이터 트래픽 환경 하에서, 이용자 데이터비용 부담 경 감 및 CP의 망 고도화 비용 분담을 위한 수단, 모바일광고 데이터 해결 대안 등으로서의 제로 레이팅의 순기능 고려
 - ✓ 물론, ISP나 유력 CP가 인터넷 생태계의 게이트 키퍼가 되는 등 경쟁법적 우려에 대한 보완 책은 있어야 함
 - ✓ 따라서, 사전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사안별로 부당성 내지 경쟁저해성을 분석하여 사후적으로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





감사합니다



한승혁 변호사

Tel: 02-528-5633

E-mail: shhan@yulchon.com